# < 정 오 표 (1)>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스몰뷰티플러스증권투자신탁[주식]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2015.12.31
- 3. 주요 정정사항 :
  - 운용전문인력 변경(책임: 전태성→이해진)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채권평가회사 추가(에프앤자산평가)
  - 일반사무관리회사 사명변경

[규약]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1. (생략)	1.(현행과 동일)
등)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2.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u>취득시</u> 신
	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	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이하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
	"채권"이라 한다)	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3. (생략)	3.(현행과 동일)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u>취</u>
	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	<u>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및 원화
	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	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
	다)	이라 한다)
	5~12. (생략)	5~12.(현행과 동일)
	<신설>	13.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u>
		<u>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u>
		말한다. 이하 같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제한)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ㆍ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
제20조(한도 및 제한	①~③ (생략)	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①~③ (현행과 동일)
의 예외)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제한)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u>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당시 <u>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u> <u>가액</u> 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서 등)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자산운용</u>
	기 전자우편 무조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입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	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
	야 한다.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해진
	-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 부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8. 집합투자기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구의 투자대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채권(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BBB- 이상이어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	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
	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제외합니다)	사채는 제외합니다)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3-이상인 것	년 이내이고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3-이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신설>	-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구의 투자대상	<동일종목 투자>	<동일종목 투자>
	- (생략)	-(현행과 동일)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
	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
	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응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u>국가나</u>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u>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u>
		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
		<u>권</u>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투자한도 및 제한의 예외>
	- (생략)	- (현행과 동일)
	<신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
		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
		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
		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
		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
		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	-	최근 결산일(반기)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
의 재무 및 운용실적		<u>이트</u>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4부. 3. 기타 집합투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나.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자기구 관련회사에	<u>외환펀드서비스</u>	<u>하나펀드서비스</u>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라.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신설>	<u>에프앤자산평가</u>
제5부. 2. 집합투자기	(2)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구의 해지에 관한 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항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u> </u>	,	, , _ =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 일합니다. (이하 생략)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u>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u>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 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 나. 수시공시 항

구의 공시에 관한 사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신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 변경에 관한 공시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제5부. 3. 집합투자기 나. 수시공시 구의 공시에 관한 사 (2) 수시 공시 항

- (생략)

- (생략)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

(2) 수시 공시 - (현행과 동일)

나. 수시공시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u>는 제외</u> - (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생략)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제5부. 기타 투자자보	<신설>	<u>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u> 5.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호를 위해 필요한 사 항	· ○ 전 글 /	3. 접접무자접자의 고유재진 무자에 된단 사항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	- 책임운용전문인력: 이해진
	- 부책임운용전문인력:(생략)	- 부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1부. 6. 투자실적	-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추이		
제3부. 요약재무정보	-	최근 결산일(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

# < 정 오 표 (2)>

-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마켓밸런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5.12.31
- 3. 주요 정정사항 :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전태성→김승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규약]

<b>╁</b> ᢡӀ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등)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u>취득시</u> 신
	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	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
	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이하 "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
	채권"이라 한다)	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3. (생략)	2~3.(현행과 동일)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u>취</u>
	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	<u>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
	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	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
	다)	이라 한다)
	5~13. (생략)	5~13.(현행과 동일)
	<신설>	14. <u>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u>
		<u>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u>
		<u>말한다. 이하 같다)</u>
제19조(운용 및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제한)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Г	T	T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u>국가가 발행한 채권</u> ,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제20조(한도 및 제한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의 예외)	<신설>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
		<u>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u>
		<u>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u>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
		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
		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제한)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u>투자신탁재산 총액</u> 의 100분의 10을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영지 <u>무사진덕재진 홍액</u> 의 100분의 1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당시 <u>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u>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그피어에서는 이의 단역.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서 등)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자산운용</u>
	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 기 오편바소은 의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 한다.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 전기·	<u>답에 따다 중시하는 것으로 걸금걸 구 있으</u>   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다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8. 집합투자기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구의 투자대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제외합니다)	사채는 제외합니다)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년 이내이고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신설> 	-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게이브 이 지휘투자기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2부. 8. 집합투자기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구의 투자대상 	<동일종목 투자>	<동일종목 투자>
	-(생략) 	-(현행과 동일)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하시면 6 기의 30/8개시 : 사용세용면, 목무   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세이션(현기년 이어되면 이어 중 기기의 시	지승선(기국에 엥에는 것은 제되답니다) 지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
	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다음 남은에 다구 본러는 남는데 본 6년 다     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
	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
	' ' ' ' ' ' ' ' ' ' ' ' ' ' ' ' ' ' '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

(. 5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R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론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u>국가나</u>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 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변식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신설>	<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한 신용 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 - 의 재무 및 운용실적		최근 결산일(반기)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 이트
등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	2)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항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호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 a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į į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u> </u>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사이트로 트리프트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조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작년보는 근데보보자(보기자근데의 데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조님/글 국용하여 무지지해게 표구하여하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	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
	일합니다.(이하 생략)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이하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	나. 수시공시	나. 수시공시
구의 공시에 관한 사		(2) 수시 공시
항	- (생략)	- (현행과 동일)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 (생략)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
		 - (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
구의 공시에 관한 사	시	A
항	- (생략)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u>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u>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정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	--	---	---	-------	-------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1부. 6. 투자실적	-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추이		
제3부. 요약재무정보	-	최근 결산일(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

# < 정 오 표 (3)>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스타플러스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5.12.31

3. 주요 정정사항 :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전태성→김승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규약]

一十七月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등)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u>취득시</u> 신
	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
	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이하 "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
	채권"이라 한다)	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3. (생략)	2~3.(현행과 동일)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u>취</u>
	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	<u>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
	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	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
	다)	이라 한다)
	5~8. (생략)	5~8.(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현행과 동일)	1~2.(현행과 동일)
	<신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u>한다. 이하 같다)</u>
제19조(운용 및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제한)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
		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C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sup>-</sup>	
	이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00 10 11 12 2 11 1000 1 2 2 1 1 1 1 1 1
	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
		<u> </u>
제20조(한도 및 제한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의 예외)	C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
1 11 17		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
		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
		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제한)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741 E7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E 게임하는 경우 그 게임님의 경우는 게임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조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도피하여자는 하다 된다. 	<u>건크</u> 의 100분의 10일 포죄하여자는 하다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서 등)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 제38 꽃 제88기 H8에 기억의 무기지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에게 시민군(S포포지, 시민포인·린디포포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지글 교수에는 공수에는 근데되지 그는 에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서울 교수이는 8구에는 단배되지 그는 에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ㄹㅁㄹ 요취취 ㅋㅂ ㅗㄴ 단까푸린ન	L remide 요하의 미리 쓰는 단위푸란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다 다마 자사으요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자산운용</u>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진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
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
야 한다.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8. 집합투자기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구의 투자대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채권(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제외합니다)	사채는 제외합니다)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년 이내이고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신설>	-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u>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u>
제2부. 8. 집합투자기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구의 투자대상	<동일종목 투자>	<동일종목 투자>
	- (생략)	-(현행과 동일)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	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
	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
	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

	T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	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
	은 그	
	C   구 기 이에	C   기자(SM)   E   T   기자(SM)   증권(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
	중권() 국제중제권() 중최최제합에 적은       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	ㅎ면(
	¬^^; >^^; =	¬^^o^^o^^emosisin, 한국포국마860/16    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합니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
		<u>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u>
		<u>권</u>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
		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
		등급이 집합투자규약 제17조에서 정한 신용
		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
		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
		기간 한경 중 결보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	-	<u> </u>
의 재무 및 운용실적		0  <u>E</u>
등에 관한 사항		
제4부. 1. 집합투자업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자에 관한 사항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5부. 2. 집합투자기	(2)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구의 해지에 관한 사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항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1		ı <u>"</u> <del>,</del>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니다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와 동 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 일합니다. (이하 생략)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 나. 수시공시 나. 수시공시 구의 공시에 관한 사 (2) 수시 공시 (2) 수시 공시 항 - (생략) - (현행과 동일)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 (생략)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 - (생략) 제5부. 3. 집합투자기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 구의 공시에 관한 사 시 시 - (생략)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내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 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1부. 6. 투자실적	-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추이		
제3부. 요약재무정보	-	최근 결산일(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

# < 정 오 표 (4)>

1. 정정대상 투자신탁

- 유리슈프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

2. 효력발생예정일(변경시행일) : 2015.12.31

3. 주요 정정사항 :

- 운용전문인력 변경(부책임: 전태성→김승태)

-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투자대상 추가

- 투자대상자산 신용평가등급 관련 내용 보완

#### [규약]

항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
등)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증권(법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신용평가등	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채권( <u>취득시</u> 신
	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	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며 사모사채
	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	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
	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다)(이하 "	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한
	채권"이라 한다)	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2~3. (생략)	2~3.(현행과 동일)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4.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년 이내이고 <u>취</u>
	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	<u>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상인 것 및 원화
	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이라 한	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이하 "어음 등"
	다)	이라 한다)
	5~8. (생략)	5~8.(현행과 동일)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집합투자업자
	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2.(현행과 동일)	1~2.(현행과 동일)
	<신설> 	3.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
		<u>한다. 이하 같다)</u>
제19조(운용 및 투자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
제한)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는 것은 제외한다),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마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
		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
	C	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
		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sup>-</sup>	
	이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 · · · · · · · · · · · · · · · · · ·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	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	O O F O T
	한다)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권을 말한다),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
		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
		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
		<u> </u>
제20조(한도 및 제한	①~③ (생략)	①~③ (현행과 동일)
의 예외)	C	④ 집합투자업자는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
1 11 17		가등급이 제17조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
		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
		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49조(금전차입 등의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② 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
제한)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741 E7	당시 투자신탁재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E 게임하는 경우 그 게임님의 경우는 게임     당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조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도피하여자는 하다 된다. 	<u>건크</u> 의 100분의 10일 포죄하여자는 하다     된다.
제50조(공시 및 보고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⑦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자
서 등)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 제38 꽃 제88기 H8에 기억의 무기지     에게 자산운용보고서, 자산보관·관리보고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에게 시민군(S포포지, 시민포인·린디포포    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판매회사 또는 예
	지글 교수에는 공수에는 근데되지 그는 에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서울 교수이는 8구에는 단배되지 그는 에     탁결제원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ㄹㅁㄹ 요취취 ㅋㅂ ㅗㄴ 단까푸린ન	L remide 요하의 미리 쓰는 단위푸란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하다 다마 자사으요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u>다만, 자산운용</u>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진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에	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가 해당 집 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

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
야 한다.	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
	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고,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일괄신고서/투자설명서]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2부. 8. 집합투자기구	가. 투자대상	가. 투자대상	
의 투자대상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 채권 :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	지방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특수채	
	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	
	발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한 채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	
	사채권(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하	채권(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 이상이어야	
	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하며 사모사채권 및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사채는 제외합니다)	사채는 제외합니다)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 어음 등 :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	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	
	는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	을 갖춘 것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기	
	니다),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으로서 만기가 1	
	만기가 1년 이내이고 신용평가등급이 A2-	년 이내이고 <u>취득시</u> 신용평가등급이 A2-이	
	이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	상인 것 및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증서	- 환매조건부매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신설>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u>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u>	
제2부. 8. 집합투자기구	나. 투자제한	나. 투자제한	
의 투자대상	<동일종목 투자>	<동일종목 투자>	
	- (생략)	-(현행과 동일)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	ㅇ자산총액의 30%까지 : 지방채증권, 특수	
	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	
	채권은 제외합니다)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음[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제2항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	
	및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합니다], 법 시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	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	

	T	T
	한 어음만 해당한다), 법 시행령 제79조제 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리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한다.) 또는 어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 도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주택저당채권 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한다) 및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 또는 양도성 예금증서와 같은 호 가목 ·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모집의 방법으로 발행한 채권만 해당합니다) 또는 어음,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을 말합니다), 법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행위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신설>	< 신용평가등급 하락시 조치>
		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합       니다.
제3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	최근 결산일(반기) 및 작성일 기준으로 업데 이트
제4부. 1. 집합투자업자 에 관한 사항	라. 운용자산규모	라. 운용자산규모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제5부. 2. 집합투자기구	(2) 자산운용보고서	(2) 자산운용보고서
의 해지에 관한 사항	(건) 시민단이도교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2) 작년분이포고자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최초
	접합무자합자는 무자진릭의 최조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접입구자입자는 - 구자인칙의 외조   설정일부터 매3개월마다 법 제88조에 따른
	따른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신탁업자의
	시타어지에 하이스 바이 기계이미디 1회	하이오 바이 2개의미다 1회 이사 다비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당해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2개월 이내에 직접 또는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신설>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 종료,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 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기간의 종료 등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재된 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사항이 기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모투자신탁의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내용 포함)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 합니다.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에게 자산보 여야 합니다. 교부 방법은 자산운용보고서 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수익증 와 동일합니다. (이하 생략) 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한국예탁결제원 을 통하여 직접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교부하되 수익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법 제89조제2항제1호 및 제 3호의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수익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 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이하 현행과 동일) 제5부. 3. 집합투자기구 나. 수시공시 나. 수시공시 의 공시에 관한 사항 (2) 수시 공시 (2) 수시 공시 - (생략) - (현행과 동일)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정 - 투자설명서의 변경. 다만, 법령 등의 개 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거나 하거나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 집합투자규약의 변경에 의한 투자설명서 변 설명서 변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경,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 변경,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 - (생략) 제123조 제3항제2호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는 제외 - (생략)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 제5부. 3. 집합투자기구 의 공시에 관한 사항 공시 시 - (생략) - (현행과 동일) - 집합투자업자는 의결권을 행사하려는 주 - 집합투자업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이 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을 행사하 식을 발행한 법인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 는 매년 4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 1일 려는 내용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항 목	정 정 전	정 정 후
제2부. 5. 운용전문인	가.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력	- 책임운용전문인력: (생략)	- 책임운용전문인력:(현행과 동일)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전태성</u>	- <u>부책임운용전문인력: 김승태</u>
		- 운용규모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업데이트
제1부. 6. 투자실적	-	<u>작성일 기준으로 업데이트</u>
추이		
제3부. 요약재무정보	-	최근 결산일(반기) 기준으로 업데이트